

납부통지서 보는 법

- 소득 정보가 불분명한 사람은 균등할액만으로 계산하므로 소득이 판명된 후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연도 도중에 75세를 맞이하는 사람은 75세의 탄생월부터 후기고령자의료보험료가 부과되므로 해당하는 사람의 75세의 탄생월 이후의 국민건강보험료를 감액합니다.
- 연도 도중에 65세를 맞이하는 사람은 65세의 탄생월(탄생일이 1일인 사람은 그 전달)부터 개호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하게 되므로 해당하는 사람의 65세의 탄생월(탄생일이 1일인 사람은 그 전달) 이후의 국민건강보험료(개호분)를 감액합니다.

· 이 통지는 2024년 6월 1일 현재의 정보로 작성되었습니다.

◆보통 징수분(납부서 또는 계좌 자동 이체를 이용한 납부)◆

납부서를 이용하여 납부하면서 필요한 납부서가 없는 경우는 별도로 문의하십시오.

(금액 단위: 엔)

期 別/기 別 納期限/납부 기간	第11期/ *月*日	第1期/제1기 7月1日/7월1일	第2期/제2기 7月31日/7월31일	第3期/제3기 9月2日/9월2일	第4期/제4기 9月30日/9월30일	第5期/제5기 10月31日/10월31일	第6期/제6기 12月2日/12월2일	第7期/제7기 1月6日/1월6일	第8期/제8기 1月31日/1월31일	第9期/제9기 2月28日/2월28일	第10期/제10기 3月31日/3월31일	合計額/합계액
前回通知 지난번 통지												
①今回通知 ①이번 통지												
②お支払済み金額※ ②납부 완료 금액※	0	0										
納めていただく金額 납부할 금액	0	0	47,090	47,090	47,090	47,090	47,090	47,090	47,090	47,090	47,090	470,900

※납부 완료 금액의 확인은 금융기관 등에 납부한 후 1개월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특별 징수분(연금에서의 공제 납부)◆

期 別 기 別	第1回(4月) 제1회(4월)	第2回(6月) 제2회(6월)	第3回(8月) 제3회(8월)	第4回(10月) 제4회(10월)	第5回(12月) 제5회(12월)	第6回(2月) 제6회(2월)	合計額 합계액
前回通知/지난번 통지	0	0					0
今回通知/이번 통지	0	0	0				0

연금에서 보험료를 징수하는
금액이 여기에 기입됩니다.

保険料を引き落としする年金/보험료를 공제하는 연금	
特別徴収義務者/특별징수의무자	
特別徴収中止理由/특별 징수 중지 이유	

◆ 2025 년도 가정수액 ◆

第1回(4月) 제1회(4월)	第2回(6月) 제2회(6월)	第3回(8月) 제3회(8월)
0	0	0

가정수란 다음 연도 4월, 6월, 8월의 특별 징수를 말합니다.
가정수액은 해당 연도 2월의 특별 징수액과 동일한 금액이 될 예정입니다.

가입자 전원의 적산 내역입니다.

◆개인별 내역(참고)◆ 성명이 간 경우는 표기 사정상 생략될 수 있습니다.

氏 名/성 명	今回通知/이번 통지		前回通知/지난번 통지		加入月/가입월												
	個人別保険料(概算) 개인별 보험료(개산)	個人別算定基礎額 개인별 산정 기초액	個人別保険料(概算) 개인별 보험료(개산)	個人別算定基礎額 개인별 산정 기초액		4	5	6	7	8	9	10	11	12	1	2	3
김길동	346,700 円/엔	2,000,000 円/엔	0 円/엔	円/엔	加入月 가입월	○	○	○	○	○	○	○	○	○	○	○	○
이영희	62,100 円/엔	0 円/엔	0 円/엔	円/엔	加入月 가입월	○	○	○	○	○	○	○	○	○	○	○	○
김철수	62,100 円/엔	0 円/엔	0 円/엔	円/엔	加入月 가입월	○	○	○	○	○	○	○	○	○	○	○	○
	円/엔	円/엔	円/엔	円/엔	加入月 가입월												
	円/엔	円/엔	円/엔	円/엔	加入月 가입월												
	円/엔	円/엔	円/엔	円/엔	加入月 가입월												
	円/엔	円/엔	円/엔	円/엔	加入月 가입월												
	円/엔	円/엔	円/엔	円/엔	加入月 가입월												

가입자 각자의 구
단서 소득입니다.

40세~64세인 사람이 해당됩니다.
연도 도중에 탄생일을 맞이하는
사람은 해당 월수입니다.

동그라미 표시가 있는
달이 해당 월입니다.

※'개인별 보험료(개산)'의 합계는 끝수 처리 등의 관계로 위의 '보험료액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계산에 대해서는 뒷면을 참조하십시오.

※보험료가 산정되는 달에는 ○ 또는 ◎ 및 ☆ 기호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 피용자보험의 피부양자였던 사람이면서 보험료 경감(소득할 감면 및 균등할액 반액)의 적용이 있는 사람
☆: 비자발적 실업에 의한 보험료 경감(급여 소득을 100분의 30으로 경감하여 보험료를 계산)의 적용이 있는 사람

[이 통지에 관한 문의처]

국보자격부과담당 ☎ 03-3228-5511~5512

기별 금액입니다. 은행 등의 계좌 자동 이체를
이용하는 사람은 상단의 납기일에 이체됩니다.
납부서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사람은 하단의
금액을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편의점에서
납부하십시오.

올해 75세가 되는 사람의 보험료에 대해

올해 중에 75세가 되는 사람은 탄생월부터 후기고령자의료제도의 보험으로 이행되므로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는 탄생월 전월분까지로 계산합니다. 납부 횟수는, 동일 세대에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가 없는 경우는 탄생월 전월로 납부가 종료되도록 분할하고, 가입자가 있는 경우는 전월분의 보험료를 합계하여 이듬해 3월까지 균등하게 분할합니다.

보험료의 납부는 원칙적으로 계좌 자동 이체

보험료는 연금에서 공제 납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좌 자동 이체로 납부하십시오. 계좌 자동 이체가 불가능한 경우는 나카노구 소정의 납부서를 이용하여 납부하십시오.

◆현금카드를 이용한 계좌 자동 이체 수속

계좌의 현금카드가 있으면 간단히 계좌 자동 이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수속은 구청 또는 지역 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취급 금융기관

- ・미츠호 은행 ・미쓰비시 UFJ 은행
- ・미쓰이 스미토모 은행 ・리소나 은행
- ・사이교 신용금고 ・세이부 신용금고
- ・유초 은행

◆계좌자동이체의뢰서를 이용한 계좌 자동 이체 수속

위의 방법 외에도 우편 등으로 계좌 자동 이체를 수속할 수 있습니다. 소정의 '계좌자동이체의뢰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고 세대주인과 금융기관 신고인을 찍은 후 제출하십시오. '계좌자동이체의뢰서'는 나카노구에 소재하는 금융기관, 우체국, 구청, 지역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수속이 끝나면 '계좌 자동 이체 시작 안내'를 발송합니다.

[문의처] 국보수납담당(구청 2층)

☎ 03-3228-5507

보험료의 납부에 관한 Q&A

Q: 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A: 실업,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보험료를 기간 내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는 신속히 국보징수담당(구청 2층)에게 상담하십시오.

Q: 보험료를 체납하면 어떻게 됩니까?

A: 특별한 이유 없이 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독촉장이나 최고장 등을 보내거나 전화, 방문 등을 통한 최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유효기간이 짧은 단기피보험자증을 발급합니다. 이후에도 여전히 미납이 계속되면 보험증 대신 피보험자자격증명서를 발급합니다. 피보험자자격증명서로 진료를 받으면 의료기관에서 일한 의료비 전액을 100% 지불해야 하며, 나중에 특별요양비(의료비의 70%~90%)의 급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을 차압하거나 급부를 정지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료는 기간 내에 신속히 납부하십시오.

[문의처] 국보징수담당(구청 2층)

☎ 03-3228-5509

소득할액의 보험료율, 균등할액의 연간액,
1세대의 보험료 최고 한도액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해

1. 부과 결정

국민건강보험법 제 76 조 및 나카노구 국민건강보험조례 제 14 조 및 제 14 조 2 의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의 부과 결정을 실시한 바, 동 조례 제 20 조 및 지방자치법 제 231 조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에게 통지합니다. (보험료의 산정 방법 등에 대해서는 후술하는 [별기]를 참조하십시오.)

2. 연체금

납부 기간까지 보험료가 완납되지 않는 경우는 납부 기간의 다음날부터 납부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해당 금액이 2,000 엔 이상(1,000 엔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는 이를 버립니다.) 일 때는 해당 금액에 대해 연 14.6%(※주)(해당 납부 기간의 다음날부터 3 개월을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 7.3%(※주))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 연체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주) 연체금 비율의 특례
연체금 비율은 당분간 각 해의 특례 기준 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카노구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국보징수담당(전화: 03-3228-5509)에게 문의하십시오.

3. 심사 청구

- ① 이 결정에 불복할 때는 이 결정이 있는 것을 안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 개월 이내에 도쿄도 국민건강보험 심사회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결정이 있는 것을 안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 개월 이내라도 이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 년을 경과하면 심사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② 결정 취소의 소송에 대해서는 위 ①의 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을 거친 경우에 한해 해당 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것을 안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 개월 이내에 나카노구를 피고로 하여(소송에서 나카노구의 대표자는 나카노구청장입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것을 안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 개월 이내라도 해당 재결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 년을 경과하면 결정 취소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 다음 (가)~(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을 거치지 않고 결정 취소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 심사 청구가 있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 개월을 경과해도 재결이 없을 때
(나) 결정, 결정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해 생기는 현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해 긴급을 요할 때
(다) 기타 재결을 거치지 않는 것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별기]

1) 보험료의 산정 방법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는 4 월부터 이듬해 3 월까지의 1 년 단위로 산정합니다.
(1) 기초분 보험료, (2) 후기고령자 지원금분 보험료, (3) 개호분 보험료((3)은 40 세~64 세인 사람만 해당합니다.)를 합산한 금액이 연간 보험료입니다. (1), (2), (3)의 보험료는 각각 소득할액과 균등할액의 합계액입니다.

●소득할액과 균등할액의 산정 방법

소득할액
= 가입자별로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한 '산정 기초액'의 합계 × 보험료율
전년 중 소득 금액의 합계 - 기초 공제액(43 만 엔) = '산정 기초액'
균등할액
= 1 인당 균등할액 × 가입자 수

2) 보험료의 통지와 납부 방법

- ① 1 년간의 보험료(4 월부터 이듬해 3 월까지의 12 개월분)를 6 월 중순에 납부통지서를 통해 통지합니다. 연간 12 개월분의 보험료를 6 월부터 이듬해

3 월까지 연 10 회로 매월 납부하게 되므로 **1 회당 보험료는 1 개월분 보험료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 ② 연도 도중에 가입한 경우는 신고한 달 또는 신고한 다음 달에 납부통지서를 발송하며, 4 월 및 5 월에 가입한 경우는 6 월에 납부통지서를 발송합니다.
- ③ 특별 징수(연금에서의 공제)의 경우
4 월, 6 월, 8 월의 3 회는 가징수, 10 월, 12 월, 2 월의 3 회는 본징수로서 수령 연금에서 연 6 회 공제됩니다. 다음 연도 가징수 기간의 특별 징수액은 제 6 회(2 월)분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특별 징수(연금에서의 공제)의 대상자는 다음 (가)~(사)에 전부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가) 세대주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이다
(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세대원 전원이 65 세 이상 75 세 미만이다
(다) 세대주가 연액 18 만 엔 이상의 연금을 수급하고 있다
(라) 세대주의 개호보험료가 연금에서 특별 징수되고 있다
(마) 개호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이 연금액의 2 분의 1 을 초과하지 않는다
(바) 납부 방법이 계좌 자동 이체가 아니다
(사) 세대 내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해당 연도 중에 75 세를 맞이하는 사람이 없다

④ 보험료의 납부 방법은 특별 징수(연금에서의 공제)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계좌 자동 이체입니다.

단, 은행 계좌가 없는 등 계좌 자동 이체가 불가능한 경우는 납부서로 납부하십시오. (나카노구 국민건강보험조례 시행 규칙 제 13 조 2)

- ⑤ 보험료 납부처 등(특별 징수인 경우는 제외)
(가) 은행, 신용금고, 신용조합, 농업협동조합 등(특별 구 공금 수납 취급점)
(나) 특별 구 지정 금융기관
(다) 도쿄도, 야마나시현 및 간토 각 현에 소재하는 유초 은행, 각 우체국
(라) 나카노구청(구청 내 파출소 포함) 및 각 지역 사무소
(마) 구 지정 편의점
(바) 휴대전화(모바일 레지)의 모바일 뱅킹을 이용한 납부
(사) 스마트폰에 저장된 신용카드를 이용한 납부
(아) Pay-easy(페이지)를 지원하는 ATM,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을 이용한 납부
●자세한 내용은 나카노구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국보수납담당 (전화: 03-3228-5507)에게 문의하십시오.

3) 연도 도중에 40 세 및 65 세가 되는 사람의 개호분 보험료(40 세~64 세인 사람은 개호보험 제 2 호 피보험자라고 합니다.)

- ① 40 세가 되는 사람은 40 세가 되는 달부터 개호분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② 65 세가 되는 사람은 65 세가 되는 달 전달까지의 개호분 보험료를 이듬해 3 월까지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합니다.
※65 세가 되는 달 이후의 개호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와는 별도로 납부합니다. 따라서 65 세가 되는 달 이후의 3 월까지는, 65 세가 되는 달 전달까지의 개호분 보험료와 65 세가 되는 달 이후의 개호보험료를 납부하는 시기가 겹치지만, 납부하는 보험료에 중복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주기) 법령상 만 나이에 도달하는 날은 탄생일 전달로 간주됩니다.
●65 세 이상인 사람의 개호보험료에 대해서는 개호자격보험료담당 (전화: 03-3228-6537)에게 문의하십시오.

4) 연도 도중에 75 세가 되는 사람의 보험료

- ① 75 세의 탄생월부터 후기고령자료제도의 보험료가 부과되는 동시에 그 이후부터 국민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으므로 탄생일 전달까지의 보험료를 산정하여 통지합니다.

- ② 세대에 다른 가입자가 없는 경우는 탄생일 전달이 마지막으로 납부하는 달입니다. 다른 가입자(75 세 미만인 사람)가 있는 경우는 75 세가 되는 사람의 탄생일 전달까지의 보험료와 다른 가입자의 연간 보험료의 합계액을 이듬해 3 월까지 균등하게 분할합니다.

5) 연도 도중에 보험료가 변경된 경우

전입, 전출, 사회보험 가입 등의 이유로 세대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수가 변동된 경우는 보험료에 증감이 발생하므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여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변경된 달 이후에는 변경 후의 납부서로 납부하십시오. (계좌 자동 이체인 경우는 변경 후의 보험료가 이체됩니다.) 또한 보험료를 과납한 경우는 나중에 환급통지서를 발송하여 환급합니다.

6) 나카노구 외에서 전입한 사람의 보험료

소득할액의 산정 기초가 되는 전년 중 소득 금액의 확인 자료가 없으므로 전입하기 전에 거주했던 시구정촌에 소득 금액을 조회합니다. 따라서 먼저 균등할액만 산정하여 통지하고, 소득 금액이 판명된 후 소득할액을 산정하여 다시 보험료를 통지합니다.

7) 퇴직자료제도 대상자(퇴직피보험자 등)의 보험료에 대해

보험료의 산정 방법은 일반 가입자와 동일합니다.

8) 균등할보험료의 감액

전년의 소득 금액이 조례에서 규정한 기준 이하인 세대는 균등할액이 감액됩니다. 단, 주민세의 신고를 통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세대주를 포함한 가입자 전원의 소득이 판명되는 것이 조건이므로 반드시 1 월 1 일 현재 거주하는 시구정촌에 주민세를 신고하십시오.

9) 보험료의 감면

사업의 폐지, 해고, 질병,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생활이 현저히 곤란해져 예금 및 저금 등의 자산을 활용해도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워진 경우는 보험료의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나카노구 국민건강보험
이 통지서에 대한 문의
국보자격부과담당(전화: 03-3228-5511~5512)
계좌 자동 이체 및 보험료 납부처에 대한 문의
국보수납담당(전화: 03-3228-5507)
납부 상담
국보징수담당(전화: 03-3228-5509)
외국어판 가이드북을 나카노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